(붙임2)

경 영 공 시

본 농(축)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)

2. 공시내용

○ 대 상 : 상무 강환성 외 1명

○ 경 위 : 금융실명거래 위반으로 인한 손실발생

○ 주요내용 : 상무 강환성 주의촉구, 과장대리 김진희 견책

○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20,270,000원

2017년 02월 14일

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장